

영등포구의회  
제 195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148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의료급여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법」의 용어 개정(안 제2조, 안 제7조, 안 별지 1호~2호 서식)
- 대불상환금 ⇒ 대지급금상환금, 대불금 ⇒ 대지급금
  - 의료보호 ⇒ 의료급여

나. 회계관직 명칭 변경(안 제4조~제7조)

- 경리관 ⇒ 재무관
- 기금출납명령관 ⇒ 기금담당관
- 기금출납공무원(의료보호 담당주사) ⇒ 기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팀장)

나. 서울시에 결산보고 일정 변경(안 제9조의2)

- 다음해 3월 20일까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수당 등), 제11조(운영세칙),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3. 31 ~ 4. 20)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용어 및 재무회계관직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1) 의료급여 용어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있는 “의료보호”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의료급여”로 개정함.
- 2)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처리 절차에 맞게 기금출납원을 당초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에서 지출업무 팀장으로 정비함.
- 3)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과 결산서 등의 의회 제출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 보고시기를 서울시 조례와 맞춰 다음해 3월 20일에서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로 변경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총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

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31.>